

고창군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19년 2월 7일

개정 2020년 6월 29일

개정 2021년 3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지역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통합 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단체를 관리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4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Gochang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약칭GCSAD)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고창군체육회가 속한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창군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회원종목단체 관리지원
3. 생활체육교실운영,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전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지원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8.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가입을 인정한 종목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 단체(이하“종목단체”라 한다)로써 조직한다.

②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한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군지부를 말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종목단체의 가입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②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약간 명(단,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 사 : 15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이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 중 1인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정수에 5인 이상은 회원종목단체의 대표를 선임하되,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이사 정수에는 장애인 선수출신을 3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 ④ 여성임원이 재적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고창군 사회복지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를 당연직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⑦ 감사 2인 중 1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⑧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선한다.
- ⑨ 임원의 취임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 또는 사무국에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원을 제출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보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2.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이 공석일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 4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상실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 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장애인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된 자
11. 해당 종목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다른 친족임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종목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회비)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사용용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임원중 당연직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감사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및 집행 기관이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8. 종목단체의 가입·탈퇴 및 제명·강등에 관한 사항
9. 기타중요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부회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으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각종위원회

제2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인사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회원종목단체

제22조(기관) 회원종목단체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으로써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23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규정)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지부 및 소속기관

제25조(지부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읍·면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규정) 지부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국비, 도비, 군비,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회비
5. 사업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관리) 본회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본회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

제3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

제31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관리 감독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3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집행기관으로써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필요하면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사무국의 직제와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9조(경영공시) 본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규약개정) ① 본회의 규약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규약의 변경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의 의결로써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 본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미비사항) 이 규약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